

## 카메라 및 관련 제품 특소세 폐지 시급

카메라 및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요구가 강하다.  
카메라가 생계도구이자 교육기자재가 될 마당에 고가사치품이라는 논리로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밀수품의 구입을 부추기고,  
사진작가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편집부

카메라 및 카메라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프로사진가협회는 7월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 사진기 및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관세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한국광학기기협회를 비롯한 사진 관련 단체들은 그간 카메라 특소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피력해 왔다. 밀수품과의 전쟁을 벌여온 LG상사(주), 아남인스트루먼트(주)와 같은 카메라 판매 업체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련 단체 및 업계, 사진작가, 사진 전공 학생들의 소망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 폐지는 어려울 듯하다. 8월 중순경 재정경제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분간 전체적인 조정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담당자는 '카메라 특소세 폐지의 타당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형평성 때문에 향후,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등 전체 품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작년에 대폭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1, 2년 이내는 힘들 것 같

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작년 12월 3일부로 특소세를 대폭 폐지했다. 가전 제품 가운데는 TV, 캠코더, 냉장고, 세탁기가 해당됐으며, 대중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도 포함됐다. 기대했던 카메라는 대상에서 제외돼 개연성이 없는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LG상사(주)의 지홍민 과장은 카메라 보유가 집집마다 보편화된 마당에 특소세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산업 비중이 큰 품목은 속속 특소세가 없어지는데 카메라 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듯하다. 시장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캠코더 등은 20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면세해 주면서, 왜 생계도구인 카메라는 특소세를 물려 여러 부작용을 만드느냐."고 반문한다.

**카메라, 사치품 아니다  
생계수단이자 교육기자재**

특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사치품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로 현재 100만원이 넘는 카메라, 50만원이 넘는 카메라 관련 제품(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등)에 3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가 사치품이라는 것은 옛말이다.

오늘날 카메라는 스튜디오 운영자나 사진작가, 기자 등 사진촬영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생계수단으로,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기자재로 필수품이 되었다. 학생들만 예로 들더라도 1년에 배출되는 사진 전공자가 5,000명 가량이란 신문방송학과, 디자인과 등을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관련 학과까지 포함하면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러니 사치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실에 안 맞는다.

### 특소세 부과, 밀수 조장 세금 누수에 세수 감소까지

가장 큰 문제는 밀수품의 성행이다. 세금을 물지 않고 들어와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밀



수품은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정품 카메라보다 40% 가량 가격이 낮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가격의 밀수품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음성적인 시장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가용 카메라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중 약 54%(150억원 가량)가 밀수라고 추정한다. 이 물량은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누수되는 것이다.

특소세가 폐지돼 정상제품이 싼 가격에 유통되면 자연스럽게 밀수입이 차단될 것이고 그만큼

### 특별 소비세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소비세.

현행 특별소비세법에는 제1조에서 특소세를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

〈특소세에서 사진기 해당 조항〉

고급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와 관련 제품(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문서복사(제판)용, 신분증 제작용, 증명사진전용, 반도체소자 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함) 제외)

(가) 고급사진기-1개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1개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세수가 늘어 정부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업계에서는 카메라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13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프로 사진작가들은 특소세 부과는 사진문화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외국 사진가들에 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 해외시장 홍보에서 큰 역할을 하는 카탈로그 제작 등 광고, 마케팅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 구시대적 논리 벗길

1977년 도입돼 10여 차례 개정된 특소세는 소득수준 상승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이미 대중화

되거나 생필품이 된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용품에까지 과세하여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작년에 특소세법을 대폭 개정해 몇몇 품목에 면세 조치를 내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컬러 TV가 부잣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요즘 이를 두고 사치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카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카메라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시대적 논리이다.

관련 부처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니 카메라 및 관련 제품의 특소세 폐지는 당연한 명제가 됐고 문제는 시기인 것 같다. 하루빨리 카메라 유통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

### 잠깐정보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1997년 미국출판협회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서적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 저작물의 정보를 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한 표준정보식별 문자이다.

책마다 고유하게 붙여 있는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처럼 온라인 상의 전자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등)에 특정한 코드값을 붙여 관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DOI는 Prefix와 Suffix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Prefix는 오브젝트(콘텐츠)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이고 Suffix는 오브젝트 그 자체의 고유 코드이다. 사용자는 DOI를 알고 있으면 DOI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여 그 오브젝트가 있는 URL의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돼, 사용자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효율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찾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DOI는 오브젝

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시킬 수도 있다.

즉, DOI는 단순한 목록에 지나지 않고 저작권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종의 패키지 형태를 갖는 셈이다.

반면,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DOI가 정보의 공유라는 인터넷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DOI체제는 현재 독일의 슈프링어, 네덜란드의 에스 비어 등 세계에서 유력한 12개 출판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제출판협회(IPA)는 이미 DOI체제 마련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했으며 98년 1월에는 DOI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 DOI재단(IDF)이 결성됨으로써 세계 출판계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에서는 1999년 9월 미국정보표준화기구(NISO)에서 표준으로 확정됐다